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이 수 현 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자치행정과장)	일 자	질의 : 2003년 12월 11일 답변 : 2003년 12월 11일
회 의	제 10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3차 예결특위		
<p>【질의요지】</p> <p>○ 진부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관련</p>			
<p>【답변요지】</p> <p>○ 평창군 관내 학교 급식소는 총34개교 중 32개가 운영중이며 2개교는 학생수가 적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식소 운영 : 34개교 중 32개교(초등21, 중등, 6, 고등 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영운영 : 26개교(초등 21, 중등 3, 고등 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중등 3(평창중,미탄중,봉평중), 고등 2(평창고, 봉평고) · 위탁운영 : 6개교(중등 3, 고등 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중등 3(미탄중,대화중,봉평중), 고등 2(대화고,진부고,대관령고) - 급식소 미운영 : 2개교(계촌중,용전중) <p>○ 급식소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급식비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일부 중·고등학교는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급식에 관련된 자재는 평창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 점차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형태임</p> <p>○ 평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 5호의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시설의 신축 및 보수사업</p>			

에는 보조사업을 시행치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

- 동 규정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급식시설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며
- 진부초등학교 급식시설 증·개축후 위생적이며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직영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